

종합계약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종합 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 협의체 중 대표기관과 참여기관 간에 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감리,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 업 명 :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및 설치운영 용역
2. 사 업 기 간 : 계약일 ~'18.12.28.
3. 대 상 지 의 위 치 : 지하철6호선 녹사평역 내부 및 지상부
4. 총 사 업 비 : 2,700백만원(예정)
5. 조성 예상 면적 : 녹사평역 내부(약 6.340㎡), 지상부 교통섬(약 2.060㎡) 외
6. 종합용역 설계서: 별첨

제2조 (관련기관 실무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무협의체
2. 주사무소 소재지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제3조 (협의체의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기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공공미술사업팀 (계약담당자: 박재은)
2. 참여기관 : 서울도시철도공사 홍보실 디자인개선 추진단 (계약담당자: 김부원)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5조 (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보관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 ①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 중 참여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요원을 임명하여 사업장에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협조한다.

제7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대가지급)

- ① 선급금,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 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표기관에게 지급한다.
- ② 대표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선급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 · 물품 ·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 ① 동 사업 준공이후 발생한 자산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 참여기관을 포함, 관련 기관간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위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사업”에만 집행 하여야 하며, 집행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위탁금의 취급)과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2018. 2. 20.



대표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장 박원준



관련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사장 김태호

